

3.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

□ 제정이유

- 동 제정 조례안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동물방역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로
- 체계적인 방역과 진료를 통해 축산업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방역센터의 기능은 가축질병의 예찰·진료·조사연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외래성 질병의 감시활동을 주임무로 함 (안 제3조)
- 방역센터내의 5명이내의 축탁수의사와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두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(안 제5조)
- 축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, 제8조)
- 시장은 방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(안 제10조)
- 축탁수의사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방역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(안 제11조, 제12조)

□ 검토의견

○ 파주시는 최근 광견병과 구제역의 발생지역으로 커다란 사회적 파장과 지역경제에 큰영향을 미치는등 가축방역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동물방역관리센터의 설치로 체계적인 방역과 외래성 질병의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

○ 방역센터에는 5명이내의 축탁 수의사와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보조원으로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기구축소등 구조조정과 배치되는 일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됨